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구 미 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낭만관광과)

구미시 지역 관광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량 진입 불가 및 전기시설 미설치 등의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여 이용객 증가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위치 : 남통동 320-1 외 13필지(금오산도립공원 야영장 일원)

○ 대상 : 오토캠핑장 조성 103,019㎡

- 기정 35,839㎡, 추가 67,180㎡(사유지 55,554㎡)

○ 사업기간 : 2025 ~ 2027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 부지매입비(감정평가)	1,500백만원
공사비	8,050백만원
설계비	450백만원

○ 기준가격 : 348백만원(공시지가)

○ 주요시설 : 캠핑장(150면),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실, 개수시설, 교량 등

○ 추진현황

-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시행 : '22. 10월
- 도립공원 계획(변경)용역 시행 : '24. 2월

○ 향후추진계획

- 경상북도 투자심사 의뢰 : '24. 11월
-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시행 : '25. 1월
- 공사 착공 : '26. 3월
- 공사 준공 : '27. 12월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1건	55,554	1,500
	1.매입	1건	55,554	1,500
	2.교환 으로 취득			
	3.기타 취득			
	토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사 유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계		14건	55,554	1,500				
취득	토지	남통동 320-1	914	122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남순이	매입
		남통동 321	800	104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남순이	매입
		남통동 322-1	311	41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박전옥 외 1명	매입
		남통동 322-3	1,235	164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박전옥 외 1명	매입
		남통동 322-5	290	39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박전옥 외 1명	매입
		남통동 336	165	5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이철준	매입
		남통동 340	169	14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선산김씨문 간공과중중	매입
		남통동 350-1	575	50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고미정	매입
		남통동 350	231	19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김효숙	매입
		남통동 351	793	58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김경순	매입
		남통동 산6-2	14,187	260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김효숙	매입
		남통동 산6	20,227	338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노혜수 외 4명	매입
		남통동 산6-3	3,597	68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노혜수 외 4명	매입
		남통동 산6-4	12,060	218	2025년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노혜수 외 4명	매입

위 치 도

□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소재지 : 남통동 산 6번지 외 13필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간 : 2025 ~ 2027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세출	○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	1,950	3,500	4,550		1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225	1,750	2,275			4,250
	시 비	1,725	1,750	2,275			5,750
	민 간						
	기 타						
	합 계	1,950	3,500	4,550			10,000

5. 부대의견

- 구미시 체류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금오산권역 관광산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야영장 고질민원(차량 진입불가, 전기시설 없음) 해결을 위해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을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작성자 : 낭만관광과 관광인프라팀 강태한(054-480-267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10,000	
보상비	1,500	<input type="checkbox"/> 토지보상(15%) ○ 감정평가(안) × 1식 = 1,500,000,000원
공사비	8,050	<input type="checkbox"/> 건축, 조경, 토목, 포장(64%) - 건축공사 × 1식 = 2,000,000,000원 - 조경공사 × 1식 = 1,000,000,000원 - 토목공사 × 1식 = 2,000,000,000원 - 포장공사 × 1식 = 1,400,0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반시설(16.5%) - 전기·통신 공사 × 1식 = 300,000,000원 - 상·하수도 × 1식 = 550,000,000원 - 교량 × 1식 = 800,000,000원
설계비	450	<input type="checkbox"/> 설계용역(4.5%) ○ 실시설계용역 × 1식 = 450,000,000원(공사비의 5.6%)

※ 공사비 산정 : 금오산 지역 관광활성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참조

※ 설계비 산정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 참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7.~ 11. 생략
-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

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부서		회 계 과 (낭만관광과)
입 안 자	과 장	임 응 건 (신 미 정)
	팀 장	김 은 화 (이 상 용)
	담 당 자	주 정 호 (480-5072) (강 태 한) (480-2673)